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

구 분	지 정 기 준
1.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수목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수집·재배·전시·관리·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교육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이론수업 이수시간 총 36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식물학(식물분류학을 포함한다): 60시간 이상 나) 생태학: 30시간 이상 다) 토양학: 30시간 이상 라) 재배학: 30시간 이상 마) 식물보호학(보전생물학, 병충해관리를 포함한다): 60시간 이상 바) 육종학: 30시간 이상 사) 식물원문화론[정원사(史), 식물원역사학을 포함한다]: 30시간 이상 아) 조경학(조경계획, 조경·정원설계를 포함한다): 60시간 이상 자) 시설 및 장비: 30시간 이상 2) 실습수업 이수시간 총 96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관리(옮겨심기, 토양만들기, 가지치기, 물주기, 덮기, 시비 등을 포함한다): 200시간 이상 나) 조성전시(주제원 조성, 설계, 토양관리 등을 포함한다): 200시간 이상 다) 생식질자원관리(생체, 저장, 번식, 묘목기르기, 교환, 표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200시간 이상 라) 시설장비(온실, 기계·장비, 차량 등을 포함한다) 조작·관리: 200시간 이상 마) 기록관리(수집, 표본제작, 점검, 나무이름표, 식물배치도, 기록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160시간 이상 라.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시설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

	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및 실습실 2) 급수시설 3) 화장실 4) 조명시설 5) 냉방·난방시설 6) 소방시설 나.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기숙사 4) 방송·통신시설 5) 보건시설
3. 강사 확보	이론·실습 수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전문 강사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가. 이론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당 1명 이상 나. 실습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당 1명 이상 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1명 이상
4. 평가	이론 및 실습과목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